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삭제〉

■ 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9405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성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삭제	3
[참고자료]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현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6. 22.
3.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4·16 참사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생존 학생과 희생자의 형제자매 등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으며, 재난 참사 특성상 피해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됨.

그러나 기한의 제한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어 적절한 치료를 상실할지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완전한 사회복귀와 일상 회복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한편, 기 발의된 개정안(또는 동법 제25조제2항)을 통해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비용 지급 기한을 삭제하도록 하였으나, 현행법상 생활지원금등의 지급 범위를 규정한 제23조제3항의 의

료지원금 지급 기한 역시 이와 연동되어 있어 법률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제25조제2항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제23조제3항 단서에 명시된 의료지원금의 지급 기한 규정 또한 함께 삭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기간 제약 없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주요내용

4·16세월호참사 당시 청소년이었던 생존자(단원고등학교 학생 등) 및 희생자의 피해 가족에 대한 치료지원 기간의 삭제(안 제23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삭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단서 삭제).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생활지원금 등) ① . ② (생략)	제23조(생활지원금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u>다만, 의료지원금 지급은 2</u> <u>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u> <u>으로 한정한다.</u>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u><삭제></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3조¹⁾는 국가가 피해자²⁾(①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생존자), ②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③생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④배·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지원금의 지급은 참사 발생 15년 후인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음.

- 특별법 제정 당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2016.3.28.까지)으로 규정하였으나, 시행령 개정('17.12.19. 시행)으로 참사 후 10년(2024.4.15.까지)

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 ② 생활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의료지원금 지급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 ④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7조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 나.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라.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희생자 또는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나목·다목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제5조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으로 연장되었고, 이후 비용 지급 기한을 법률에서 규정('24.6.4. 시행)하며 참사 후 15년(2029.4.15.까지)으로 연장되었음.

- 개정안은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삭제하여 피해자가 기간의 제약 없이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에 대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난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그 후유증은 장기간 이어져 지속적인 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보호 의무 강화 차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보임.

최근 5년('21~'25년)간 의료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참사 발생 10년이 지난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390명, 418명의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의료지원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

<최근 5년('21~'25년)간 의료비 지원현황>

연도	건수(건)	인원(명)	금액(천원)
2021	7,539	385	1,154,838
2022	6,345	385	959,102
2023	8,296	407	1,561,191
2024	6,893	390	1,290,718
2025	6,039	418	720,190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지급 기한의 조정 및 폐지는 소요 예산, 타 사례와의 형평성, 관계 부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으로 보임.

①해양수산부는 세월호참사로 인한 생존자, 희생자의 부모·형제·자매 등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를 위한 지원 필요성 및 법률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②국무조정실은 유가족의 생애 주기별 건강지원을 위한 의료지원금 지원기한 삭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소요 예산, 기대효과, 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③기획예산처는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기한 규정을 없애기보다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해외 유사 입법 사례를 감안할 때 지원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되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고³⁾

타 지원제도(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와의 형평성, 다른 참사 피해 지원제도 등 향후 정책 결정에 미칠 영향,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해외 유사 입법 사례⁴⁾를 살펴보면, 미국은 9.11 테러('01.9.11.)에 대하여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피해자를 대신하

3) 참고로, 2024년 6월 법 개정 당시에도 당초 의료지원금 지원 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됨

4) 해외 유사 입법례는 [참고 1] 참조

는 대리인)가 2090년 9월 30일까지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11.3.11.)에 대하여 핫스팟(경계구역, 계획적 피난구역, 긴급시 피난준비구역, 특정피난권장지점)의 피해자, 피보험자 등 및 해제·재편된 지역 및 타 시정촌 전출자에 대해 의료비와 보험료 감면을 해주되, 지자체별로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을 종료하였으며,

프랑스는 파리 테러('15.11.13.) 피해자에 대하여 테러행위로 인한 입원·진료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되, 보증기금(FGTI)의 배상 결정 통지 후 2개월까지 지원하고, 배상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테러행위 발생일부터 3년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타 지원제도로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⁵⁾은 상이를 입은 본인이 보훈병원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또는 위탁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진료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정 상이등급 미만인 사람이 상이처(傷痍處)⁶⁾ 외 질병으로 진료

5) 관련 조문은 [참고 2] 참조

6) 현행 법령상 상이처에 관한 별도의 법정 정의는 없으나, 과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806호)은 상이처를 “국비진료대상자로 결정하는 사유가 되는 상이부위 또는 질병”으로 정의하였음(현재는 해당 조문 삭제).

를 받는 경우에는 일부 본인 부담이 가능하며, 본인 외에도 국가
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선순위 유족 등 일정한
가족에 대해서는 보훈병원 또는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
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른 참사 피해 지원제도로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피해자를 유가
족 및 법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 규정⁷⁾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참
사 발생 후 10년 뒤인 2032년 10월 28일로 규정하고 있음.⁸⁾

④보건복지부는 제23조제4항 신설을 통해 세월호참사로 인한 신
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범위 등을 전문적으

7)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2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
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3)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
한 사람

8)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및 기간) ① 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
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2032년 10
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질병·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범위,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로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세월호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의료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함.

개 정 안	수정안
제23조(생활지원금 등) ① · ② (생 략)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④ (생 략)	제23조(생활지원금 등) ① · ② (생 략)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④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범위 등을 전문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자문위원회(이하“의료지원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의료지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조직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생 략)

-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⁹⁾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두어 피해구제를

9)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① 10·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및 기간) ① 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질병·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범위,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¹⁰⁾

문 의 처

02)6788-5427

10)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1

해외 유사 입법례

○ 미국 9.11 테러

- 「James Zadroga 9/11 Health and Compensation Act of 2010」

Sec. 202(b) 2001년 9.11 피해자 보상기금 청구기한 연장

「항공운송 안전 및 체계 안정화법(Air Transportation Safety and System Stabilization Act)」 제405조(a)(3)(B)

“개인(또는 사망한 개인을 대신하는 법정대리인)은 제407조(b)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날부터 시작하여, 해당 규정이 개정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제(c)(3)(A)(i)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Never Forget the Heroes: James Zadroga, Ray Pfeifer, and Luis Alvarez Permanent Authorization of the September 11th Victim Compensation Fund Act (2019)」

Sec. 2(b) 보상청구 제한기간 연장

“「항공운송 안전 및 체계 안정화법(Air Transportation Safety and System Stabilization Act, 49 U.S.C. 40101 주석)」 제405조(a)(3)(B) 중 ‘James Zadroga 9/11 Compensation Fund Reauthorization Act 제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2090년 10월 1일’을 삽입하도록 개정한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 「동일본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등에 대한 일부부담금 등의 면제 등의 취급에 관하여」

1. 일부부담금 등 면제증명서의 제출

동일본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건강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특별요양급여의 수급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자가 일부부담금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조치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이하 “면제인정자”라 한다)이 보험의료기관 등에서 일부부담금, 식사요양 표준부담액, 생활요양 표준부담액, 보험외비용요양비에 관한 자기부담액, 요양비에 관한 자기부담액, 방문간호요양비에 관한 자기부담액, 가족요양비에 관한 자기부담액, 가족방문간호요양비에 관한 자기부담액 또는 특별요양비에 관한 자기부담액(이하 “일부부담금 등”이라 한다)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험의료기관 등의 창구에 제출하는 피보험자증 등에 보험자가 교부하는 건강보험 일부부담금 등 면제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보험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에 면제증명서를 첨부).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국가의 피난지시 등 대상지역에서의 피보험자 등에 대한 일부부담금 면제조치에 대한 재정지원의 연장 등에 관하여」

1. 일부부담금 면제조치에 대한 재정지원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피난지시 등 대상지역(*)의 피보험자 등(동일본 대지진 발생 후, 타 시·군·구(특별구 포함. 이하 동일.)으로 전출한 피보험자 등을 포함, 이하 동일)에 대한 일부부담금 면제조치를 2014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2013년도에도 2013년 2월 28일까지와 동일한 재정지원을 예정하고 있음.

(*) 피난지시 등 대상지역이란 경계구역, 계획적 피난구역, 긴급시 피난준비구역, 특정 피난권장지점, 즉 핫스팟을 말하며, 해제되거나 재편된 지역을 포함함.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피난지시구역 등에 있는 피보험자 등의 일부부담금, 이용자부담 및 보험료(세)의 감면조치에 대한 2023년도 이후 재정지원의 취급에 관하여」

(2) 재검토에 대해서는, 2022년도는 주지기간으로 하고, 2023년도, 즉 2023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것.

○ 프랑스 파리 테러

- 「사회보장법」 제L.169-4조

① 제L.169-2조, 제L.169-2-1조 및 제L.169-3조에 따른 지원은 제L.169-1조에 따른 각 피해자에 대하여 테러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러한 지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종료된다.

1° 「보험법전」 제L.422-1조에 따른 보증기금(FGTI)이 피해배상에 관한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때

2° 위와 같은 배상 결정이 없는 경우로서, 테러행위 발생일부터 3년이 되는 날에도 보증기금에서 배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3년이 되는 때

② 다만, 군인 및 전쟁피해자 장애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L.169-2조의 일부 지원 및 제L.169-3조에 따른 지원이 계속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지원은 장애연금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이 통지되는 때 종료한다.

참고 2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 상 진료 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의2 후단에서 같다)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⑥ 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3.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6조의3제1항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1조(진료)**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④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⑤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 ⑥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2.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는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